

2026년 제1회 의정부도시공사 직무능력중심 직원채용 공고

의정부도시공사에서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4월 24일

의정부도시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 개요

가. 채용 예정 인원

구분	모집단위(직종·직급)	인원	구분 모집	임용일자
계		15명		
일반직	일반7급 (행정-청년, 지역고용창출)	1명	청년, 지역고용창출	' 26. 7. 1. (예정)
	일반7급(행정(기록물)-청년)	1명	청년	
	일반7급(기계)	1명	일반	
	일반7급(통신)	1명	일반	
상용직	시설관리원(일반-보훈)	4명	보훈	
	시설관리원(일반-지역고용창출)	3명	지역고용창출	
	시설관리원 (번호판 제작-지역고용창출)	1명	지역고용창출	
	시설관리원(기계)	2명	일반	
	시설관리원(전산)	1명	일반	

※ 모집단위별 중복지원 불가 / 세부사항 직무기술서 참고

○ 직무내용 및 근무조건: [붙임 1] 참조

2. 응시자격

가. 일반직 ※ 직렬별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직급(직렬)	자격 요건
일반7급 (행정-청년, 지역고용창출)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34세 이하인 청년(1991. 4. 25. ~ 2008. 4. 24. 출생자) ¹⁾ - 공고일 전일부터 임용 시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의정부시’ 로 되어 있는 자
일반7급 (행정 (기록물)-청년)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34세 이하인 청년(1991. 4. 25. ~ 2008. 4. 24. 출생자) 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이 있는 자
일반7급 (기계)	-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에너지관리산업기사·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기사
일반7급 (통신)	-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정보통신산업기사·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기사

※ 공통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붙임 2] 참조

1) 청년 직렬 관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 응시연령을 아래 각 호에 따라 상한 조정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나. 상용직 ※ 직렬별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직급(직렬)	자격 요건
시설관리원 (일반-보훈)	-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로서 <u>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u> - <u>취업지원대상자</u>
시설관리원 (일반-지역고용창출)	- <u>컴퓨터 관련 분야 인정 자격증²⁾</u> 소지자 -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로서 <u>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u> - 공고일 전일부터 임용 시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의정부시' 로 되어 있는 자
시설관리원 (번호관 제작 - 지역고용창출)	- <u>컴퓨터 관련 분야 인정 자격증²⁾</u> 소지자 -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로서 <u>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u> - 공고일 전일부터 임용 시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의정부시' 로 되어 있는 자
시설관리원 (기계)	-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에너지관리기능사·산업기사·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산업기사·기사 -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로서 <u>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u>
시설관리원 (전산)	-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기사 -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로서 <u>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u>

2) 컴퓨터 관련 분야 인정 자격증

구분	인정 자격증
컴퓨터 관련 분야 인정 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 ※ '11.12.31 이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1급만 인정

3. 전형 절차 ※ 각 전형별 세부 평가기준 및 합격 결정방법은 [붙임 3] 참조

: (1차) 필기시험 → (2차) 인성검사 → (3차) 서류전형 → (4차) 면접시험

가. 필기시험

- 일반직: 75문항(전공 25문항 + NCS 25문항 + 일반상식 25문항) / 80분
- 상용직: 일반상식 25문항 / 30분

나. 인성검사: 온라인, 합격·불합격만 판정

다. 서류전형: 응시자격 적격·부적격만 판단

라. 면접시험: 5개 항목 평가, 면접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중 필기 성적 우수자 순 최종 합격 결정

4. 전형 일정

구 분		시행일정
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 접수	2026. 5. 11.(월) ~ 5. 15.(금)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	2026. 5. 20.(수)
	필기시험	2026. 5. 23.(토)
	합격자 발표	2026. 5. 28.(목)
인성검사	인성검사	2026. 6. 1.(월) ~ 6. 2.(화)
	합격자 발표	2026. 6. 4.(목)
서류전형	인성검사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2026. 6. 5.(금) ~ 6. 8.(월)
	서류전형	2026. 6. 10.(수)
	합격자 발표	2026. 6. 10.(수)
면접시험	면접시험	2026. 6. 12.(금)
	합격자 발표	2026. 6. 15.(월)
임용후보자 등록		2026. 6. 16.(화) ~ 6. 17.(수)
결격사유 조회		2026. 6. 18.(목) ~ 6. 30.(화)
임용예정일		2026. 7. 1.(수)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 전형 단계별 합격자 확인은 본인이 직접 공사 홈페이지(www.uiuc.or.kr)에서 확인

※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eticket.or.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함.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2026. 5. 11.(월) 09:00 ~ 5. 15.(금) 18:00까지 / 5일간

나.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eticket.or.kr/>)에서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작성·제출

다. 증빙서류 제출

- 제출 대상: 인성검사 합격자
- 제출 기간: 2026. 6. 5.(금) ~ 6. 8.(월)
- 제출 방법: 별도 공고
-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대상자
입사지원서(소정양식) 1부	전 응시자 공통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자격요건 증빙서류 각 1부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시설관리원(일반-보훈) - 시설관리원(번호관 제작-지역고용창출) - 시설관리원(일반-지역고용창출) - 시설관리원(기계) - 시설관리원(전산)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일반7급(행정-청년, 지역고용창출) - 일반7급(행정(기록물)-청년) - 시설관리원(번호관 제작-지역고용창출) - 시설관리원(일반-지역고용창출)
가산점 자격증 사본 1부	- 가산점 대상 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시설관리원(일반-보훈)

※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적사항(나이, 성별 등)은 반드시 삭제 후 제출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 지원 완료 이후,
접수기간이 종료된 다음에는 수정할 수 없음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 지원 완료 후에 지원분야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6. 가산점 제도

○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적 용 방 법
취업지원대상자 (시설관리원 (일반-보훈))	과목별 총점의 10% 또는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이 둘 이상일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등록·유효한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1차 필기시험에 한하여 적용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총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1.12.31 이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1급만 인정

7.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공사 홈페이지 채용정보 게시판 (<https://www.uiuc.or.kr>)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마.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응시자의 학교명,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되고, 블라인드 사항 기재로 인한 불이익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사.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허위사실 기재, 자격 기준 미달)가 발생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아. 최종합격자는 직무에 따라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검사(또는 국가건강검진) 결과,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부터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되어 합격은 자동취소됩니다.
- 차.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고하지 않으나 3순위 이하도 유효하며 상위 결원 발생 시 적용).
- 카.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 수습직원(최초 근로계약 3개월)으로 임용되며,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해당 직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시: 자격요건이 ‘실제 운전 가능한 자’ 이나 실제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siseol001@uiuc.or.kr)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파.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의정부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도시공사 경영기획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기획처 운영지원팀 031-828-6832)

[붙임 1] 직무내용 및 근무조건

1. 직무내용

구분	직급(직렬)	직무내용
일반직	일반7급(행정-청년, 지역고용창출)	직무기술서 참고
	일반7급(행정(기록물)-청년)	직무기술서 참고
	일반7급(기계)	직무기술서 참고
	일반7급(통신)	직무기술서 참고
상용직	시설관리원(일반-보훈)	직무기술서 참고
	시설관리원(일반-지역고용창출)	직무기술서 참고
	시설관리원(번호판 제작-지역고용창출)	직무기술서 참고
	시설관리원(기계)	직무기술서 참고
	시설관리원(전산)	직무기술서 참고

2. 근무조건

구분	직급(직렬)	기본급	근무 시간	비고
일반직	일반7급(행정-청년, 지역고용창출)	공무원 9급 1호봉 상당	주 5일(40시간) 근무제이나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외 근로, 야간 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일반7급(행정(기록물)-청년)	공무원 9급 1호봉 상당		
	일반7급(기계)	공무원 9급 1호봉 상당		
	일반7급(통신)	공무원 9급 1호봉 상당		
상용직	시설관리원(일반-보훈)	월 240만원 상당		
	시설관리원(일반-지역고용창출)	월 240만원 상당		
	시설관리원(번호판 제작-지역고용창출)	월 240만원 상당		
	시설관리원(기계)	월 280만원 상당		
	시설관리원(전산)	월 280만원 상당		

[붙임 2] 공통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구분	기본 응시자격
학력/성별	- 제한 없음 (블라인드 기반 채용)
연령	<p>- 18세 이상 ~ 정년 이하인 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의정부도시공사 인사규정』</p> <p>제35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의정부도시공사 상용직 관리내규』</p> <p>제12조(정년) 1. 시설관리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p> </div>
결격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의정부도시공사 인사규정』</p> <p>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div> <p>-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p>

[붙임 3] 각 전형별 세부 평가기준 및 합격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 선택형(4지택일)

○ 일반직: 총 75문항 / 80분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전공과목	NCS	일반상식
문항 수		25문항	25문항	25문항
일반7급(행정-청년, 지역고용창출)	청년 지역고용창출	경영학, 행정학 (혼합 출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일반7급(행정(기록물)-청년)	청년	기록물관리학, 전자기록관리론 (혼합 출제)		
일반7급(기계)	일반	기계일반, 기계설계 (혼합 출제)		
일반7급(통신)	일반	정보통신시스템, 정보통신기기 (혼합 출제)		

○ 상용직: 총 25문항 / 30분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시험과목
문항수		25문항
시설관리원(일반-보훈)	보훈	일반상식 (25문항)
시설관리원(일반-지역고용창출)	지역고용창출	
시설관리원(번호관 제작-지역고용창출)	지역고용창출	
시설관리원(기계)	일반	
시설관리원(전산)	일반	

○ 필기시험 합격 기준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때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때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순으로 <u>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내에서 선발</u>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순으로 <u>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내에서 선발</u>

※ 필기시험 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에서 필기시험 합산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 출제문제 및 답안은 비공개함

나. 인성검사

대상	검사 방법	검사 영역	합격 기준	시험시간
필기 시험 합격자	▶ 온라인 검사	성실성, 책임감, 협동성, 능동성, 자신감, 준법성, 행동안정, 인내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신뢰도 60% 이상 및 각 영역별 총점의 평균이 40% 이상 득점 ▶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 	30분 (250문항)

※ 인성검사는 합격·불합격만 결정할 뿐, 인성검사 점수가 필기시험 점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면접시험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다. 서류전형

- 인성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의 적격여부를 판단
-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부적격만을 판단,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자로 결정

라. 면접시험

대상	평가 방법	평가 항목	합격 기준
서류 전형 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평가 항목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 ▶ 면접위원이 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격·불합격만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 및 그 응용 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시험 불합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면접시험 불합격 기준> (두 가지 중 하나 이상 해당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이상 항목을 ‘하’ 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경우 </div>

※ 필기시험 동점자의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함